

폐 기 확 인 서

폐기 의뢰자	상호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)	
	대표자	전화번호
폐기현황	제품명	
	제조번호, 제조일자	
	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	
	포장단위	
	폐기량	
폐기 사유 등	폐기사유	
	폐기일자	
	폐기장소	
	폐기방법	

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제품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폐기처리자	상 호	
폐기처리자	소재지	
폐기처리업소	대표자	(서명 또는 인)
폐기처리업소	연락처	
입 회 자	소 속	
	직 급	
	성 명	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